

# 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 성 군 의 회

## 심사결과

연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1	2736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	2737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738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	2739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740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27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2742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743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2755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0	2744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2745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2	2746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원안가결
13	2747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2748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행정구역 경계변 경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15	2750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751	203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17	2752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8	2753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19	2754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원안가결

## 주요내용

### 1.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26. 4. 27.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회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개원 임시회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같음함
  -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선거 실시 조항 신설
    - 후보 등록 및 사퇴서 제출 기한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6. 4. 27.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조직 명칭에 따라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범위와 특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를 의장 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 (현행) 4명 ⇒ (개정) 5명
-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 (현행) 행정자치위원회 ⇒ (개정) 관광복지위원회
  - (현행) 산업건설위원회 ⇒ (개정) 건설농정위원회
-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기한 명시 :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 단독 후보인 경우의 투표 미실시 조항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26. 4. 27.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안이유**

- 현재 사용 중인 의원 신분증의 서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철인 날인 규정 삭제(제6조)
  -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26. 4. 27.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의회기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기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기의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제2조)
    - 의회기 표준 규격 및 표지 색채 조항 삭제(제2조제1호, 4호, 6호)
    - 의회기 호수별 표준규격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준용 신설
  - 의원 배지 규정 삭제 및 변경(제6조제2항)
    -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한다” 조항 삭제
    - 실제 제작·배부 중인 의원 배지의 형식과 규정이 일치하도록 별표 2의 의원 배지 양식 정비(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6. 4. 27.
- 발 의 자 : 나철원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6조)
- 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 재정 지원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 ~ 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 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직위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 단순 변경

종전 명칭	변경 명칭	종전 명칭	변경 명칭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세부 변경 내용 : 34건

소관부서	제 명	개정대상
기 획 실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 제21조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제28조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8호

인구경제실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목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8호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총무과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별표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민원봉사과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2호
	장성군 건축 조례	제10조 제5항 제2호 등
관광과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등
문화교육과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주민복지과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5조
가족행복과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환경과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세무회계과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10조 제3항 등
재난안전과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등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 등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등
지역개발과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3조, 제29조
교통에너지과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보건소	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등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4조 제1항 등
체육사업소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호 등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6조 제4호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호, 제7조 제1호
황룡강사업소	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사항**

- 안 제3조(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로 수정
- 제14조(「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제6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수정
- 제15조(「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제7조 중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으로 수정
- 제24조(「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삭제

**7.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대상을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로 일원화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 주요내용

○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 삭제(안 제3조제1호)

- (현행)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연고자
- (개정) 사망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중복 지원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대상자 조문 개정(안 제3조의2제3호)

- (현행)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개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대상자별 지원금액 정비(안 제4조)

-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별 금액 정비 (대상별 차등지원, 5~30만원)

○ 별지 서식 수정 : 자격확인,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상위법 변경(안 제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같은 법 제121조의 5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에서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 개정(안 제9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개정)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26. 4. 30.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건(건물 1)

(단위 : m<sup>2</sup>,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개 사업		2,697.98	14,000,000	
건물	첨단3지구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	진원면 산동리 544-30 일원 (근린공원 1)	2,697.98	14,000,00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필지 / 1동	2,697.98	14,000,000		
취득	건물 (기부채납)	1동	2,697.98	14,000,000	지상2층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0.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장)
- 제안이유
  - 대상포진 발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하여 질병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현행)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단,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
    - (변경)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단, 접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1.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장)
- 제안이유
  - 지역특성에 맞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영양·식생활 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
- 사업 참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8조 ~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2.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 출 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장)**
- **제안이유**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에 맞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요건과 성별 균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 에서 “보건소장” 으로 변경하여 보건업무 총괄부서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안 제3조 제2항)
  -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에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지정, 명확성 제고 및 조례 문장 적정하게 현행화(안 제3조 제3항)
  -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성별 균형 기준 명시(안 제3조 제4항)
  - 조직개편 등 고려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항 수정(안 제3조 제5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3.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장)
- 제안이유
  -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7조(운영 지원) 제1항 (별표2) 선수단 훈련비 지급 기준 재정비
    - 운동선수 특성상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 식비, 간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4.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간 행정구역 경계가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함.
  - 지난 2022년(제342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이란 의결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편입면적 불일치 및 지적불부합지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재조정된 변경안에 대해 장성군의회 동의 받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지역

-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된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일원

○ 경계조정 : 첨단3지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선형으로 경계조정

○ 세부 면적내역 \* 자치단체간 면적 동일/ 필지조정

<당초 안>

장성군에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는 면적	
107필지, 166,747㎡	
광주광역시 북구	90필지, 146,387㎡
광주광역시 광산구	17필지, 20,360㎡

광주광역시에서 장성군으로 편입받는 면적	
207필지, 166,747㎡	
광주광역시 북구	185필지, 147,001㎡
광주광역시 광산구	22필지, 19,746㎡

<변경 안>

장성군에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는 지역(증감)	
103필지(△4), 159,153㎡(△7,594)	
광주광역시 북구	84필지(△6) 146,431㎡(44㎡)
광주광역시 광산구	19필지(2) 12,722㎡(△7,638㎡)

광주광역시에서 장성군으로 편입받는 지역(증감)	
242필지(35), 159,153㎡(7,594)	
광주광역시 북구	212필지(27) 146,431㎡(△570㎡)
광주광역시 광산구	30필지(8) 12,722㎡(△7,02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5.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장)

■ 제안이유

-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현행)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개정)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빈집 “활용”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호)

○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64의2에 따른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5조제3항)

○ 빈집정비 지원 조건 확대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 공공목적의 활용을 위한 빈집 조건 확대

○ 빈집의 활용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203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장)

▪ 제안이유

- 2040년 장성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성군의 장기발전방향의 구체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변경지역의 재정비 및 주민요구 수용을 위한 현실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합리적인 용도지역의 현실화, 주민 불편해소, 그리고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518.581km<sup>2</sup>

○ 내용

-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

- 상위계획 및 장성군 정책계획 수용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

- 군계획시설 계획

- 기 결정된 시설의 재검토
-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7. 장성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장)

▪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 정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발전사업자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주민참여 수단 및 비율(안 제5조)
- 개발이익 공유기준,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안 제6조 ~ 안 제8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3조)

- 이익공유, 자료요구 및 지원(안 제14조 ~ 안 제16조)
-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7조 ~ 안 제18조)
- 발전사업 양수 등(안 제19조 ~ 안 제2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8.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농업기술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분석실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분석실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분석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안 제6조, 안 제7조)
  - 분석결과 통지(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9.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 제출일자 : 2026. 4. 28.
- 제출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제안이유
  -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처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고자 「하수도법」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 시설현황 및 관리대행의 범위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처리공법	관리대행의 범위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	5,000m <sup>3</sup> /일	FA-SBR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 대행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소요예산 : 1,342,652천원/년
  - ※ 산출근거 : 2026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결과 : 적합
  -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기술적, 법규적 부문 검토

▪ 의결결과 : 원안가결